

## 6. 그 밖에 국가물류체계 및 물류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**제18조(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등)**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09. 2. 6., 2012. 6. 1., 2013. 3. 23.>

②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되고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.<개정 2008. 2. 29., 2009. 2. 6., 2010. 6. 4., 2012. 6. 1., 2013. 3. 23., 2014. 11. 19., 2017. 7. 26., 2025. 10. 1.>

1. 재정경제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외교부, 농림축산식품부, 산업통상부, 고용노동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, 국가정보원 및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

2. 물류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0명 이내의 자

③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<개정 2009. 2. 6., 2013. 3. 23.>

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⑤ 삭제<2024. 1. 9.>

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개정 2024. 1. 9.>

[시행일: 2026. 1. 2.] 제18조제2항제1호의 개정부분 중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처에 관한 부분

**제19조(분과위원회)**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물류정책분과위원회

2. 물류시설분과위원회

3. 국제물류분과위원회

② 각 분과위원회는 그 소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다.

1.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심의 · 조정할 안건으로서 사전 검토가 필요한 사항

2.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

3.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분과위원회의 심의 · 조정을 거치도록 한 사항

③ 분과위원회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심의 · 조정한 때에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· 조정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 · 조정으로 본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9조의2(전문위원회)** ①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물류정책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1. 녹색물류전문위원회

2. 생활물류전문위원회

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[본조신설 2024. 1. 9.]

**제20조(지역물류정책위원회)** ① 지역물류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· 도지사 소속으로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둔다.

② 지역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제3장 물류체계의 효율화

### 제1절 물류시설 · 장비의 확충 등